

민사소송법

【문제 1】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50점)

물음 1) 甲은 변호사 丙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丙이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의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데 그중 A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제1심법원은 ‘망 甲의 소송수계인 A’를 원고로 표시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정본을 丙이 송달받았고, 丙은 ‘망 甲의 소송수계인 A’를 항소인으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뒤늦게 이를 안 B가 위 항소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적법한가? (25점)

물음 2) 甲과 乙의 제1심 소송계속 중, 丁은 乙로부터 X토지를 甲보다 먼저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존재확인을 청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주장참가 형태의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甲의 청구와 丁의 청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아 丁의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丁만 항소하고 乙은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법원은 丁의 참가신청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丁의 항소를 기각하고, 甲의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유 없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25점)

【문제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